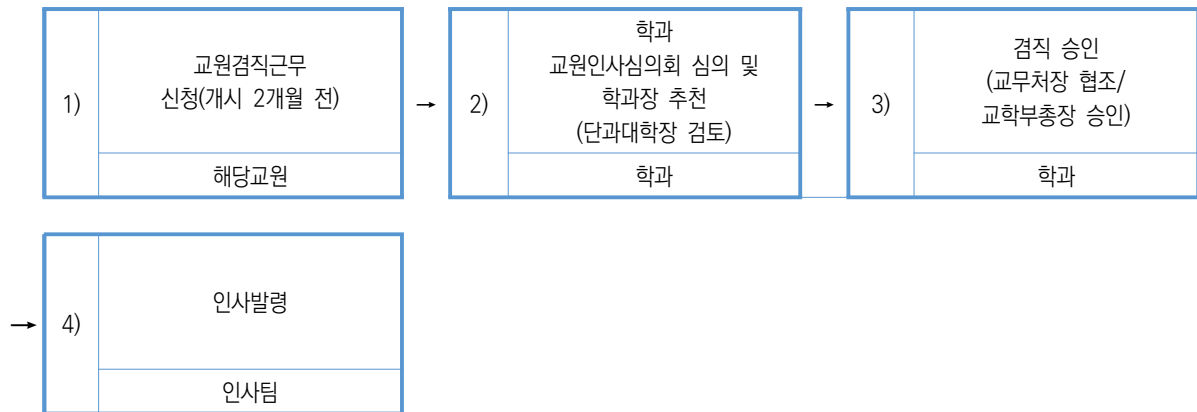


업무구분	단위업무	1.6 전임직교원 복무 - 겸직근무		
교원인사	작성일자	2021.9.	연락처	2491

## 1. 업무개요

- 가. 업무내용 : 교원의 겸직에 관한 활동을 승인하는 절차와 기준에 관한 업무
- 나. 발생시기 : 수시
- 다. 관련근거 : 인사규정 제9조, 교원 겸직근무에 관한 지침

## 2. 업무처리절차



## 3. 주요내용

- 1) 인사규정 제41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휴직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과학기술원의 발전 및 학술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 해당될 때 해당교원이 겸직근무 2개월 전 신청
- 2) 학과 교원인사심의회 심의를 거쳐 단과대학장의 검토
- 3) 교무처장의 협조를 거쳐 교학부총장이 겸직근무를 승인
- 4) 인사발령

## 4. 관련 규정

- 가. 인사규정 제9조
- 나. 교원 겸직근무에 관한 지침

## 5. 활용서식

- 가. 겸직근무신청서 및 서약서

## 6. 기타 주요 참고사항

- 겸직근무 허용기관 : 휴직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과학기술원의 발전 및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래 기관에 대하여는 겸직 허용
  - 과학기술원 부설기관(이하 '부설기관') 및 재단법인 카이스트 발전재단
  - 정부부처,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정부출연기관
  - 산학기술협력을 위한 국내 민간산업체
  - 과학기술원의 국제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외국 교육·연구기관
  - 과학기술원 창업규정에 의한 창업기업
  - 출자 및 연구소기업 관리규정에 의한 출자회사 및 연구소기업
  - ※ 창업기업의 겸직교원이 창업기간 종료 후 당해 기업에 겸직을 신청하는 경우 겸직을 허용하지 아니함.
- 겸직기간
  - KAIST부설기관 및 정부기관, 민간산업체, 국·내외 교육·연구기관에의 겸직은 겸직기관에서의 근무가 만료될 때 까지로 하되, 외국 교육·연구기관 겸직의 해외기관 체류기간은 매년 6개월 이내로(과학기술원의 명예와 발전에 현저한 도움이 되는 경우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체류기간을 그 이상으로 정할 수 있음)
  - 창업기업 및 출자회사( 및 연구소기업)에 의한 겸직은 2년 이내로 1회에 한함.
- 겸직 시 처우
  - 과학기술원과 겸직기관에서의 근무 비율에 따라 제급여 분담 원칙
  - 학생지도 및 논문지도를 위해서 일과시간 또는 이후에 KAIST에서 근무하는 경우 이의 근무비율은 10% 이내로 하여 제수당을 지급 가능
  - 근무비율에 따라 과학기술원에서 부담할 몫은 과학기술원 제급여를 기준으로 하며, 겸직기관의 제급여 및 특혜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함.
  - 강의 시에는 교재연구비, 논문지도에는 논문지도비 및 학생지도비 지급 가능